

2016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신청서식

희망플러스 통장 관련서식(1~13호)	꿈나래 통장 관련서식(14~21호)
[제1호] 희망플러스통장 접수 체크리스트	[제14호] 꿈나래통장 접수 체크리스트
[제2호] 희망플러스통장 가입 신청서	[제15호]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서
[제3호] 희망플러스통장 신청 안내문	[제16호] 꿈나래통장 신청 안내문
[제4호] 가구원소득신고서	[제17호] 가구원소득신고서
[제5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18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6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19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7호] 고용·임금 확인서	
[제8호]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제9호]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제10호]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별 제출서류

근로소득자(7종) : ①~⑥ 및 ⑦의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①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전직장 폐업 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 제출)

7-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7-2.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7-3.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7-4.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7-5.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7-5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자활사업참여자(6종) : ①~⑤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 확인서(지역자활센터 발급)

개인회생 중인 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꿈나래통장 신청자별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5종)

-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
※아동사진 아님
-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개인회생 중인 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법원), 개인회생 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개인회생인 경우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붙임 제1호】

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 체크리스트

신청자명

□ 첨부서류 확인(필수서류 미첨부시 접수불가. 단, 근로경력이 있으나 근로급여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공적자료 조회로 대체 가능)

구분	첨부서류	발급처	제출 (O/x)	비고	
필수서류	본인작성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② 가구원소득신고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공통	③ 주민등록등본 ③-1 가족관계등록부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자체발급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자만 첨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동일자(신청자 및 만18세이상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앞면』 사본 첨부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 서명
	기관발급제출서류	일반근로자	⑥ 재직증명서	근무처	이직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⑦-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근무처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징수 내역서
			⑦-2 고용·임금확인서	근무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⑦-3 일용직 근로확인서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건설현장 등 일용직
			⑦-4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일용직
⑦-5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	재직, 소득 증빙제출이 어려운 일용직 등			
자활사업 참여자	⑧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필수 제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제외)	
공공근로 희망근로 참여자	⑨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자치구·동주민센터·복지시설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의 경우 필수 제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불필요)	
해당시	개인회생	⑩ 개인회생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해당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법원(12개월이상) 혹은 신용회복위원회(10개월이상) 채무변제증인지 확인	

※ 일반근로자 : 총 7종(가입신청서, 가구원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혹은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 자활사업 참여자 : 총 6종(가입신청서, 가구원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활사업참여확인서)

※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 총 6종(가입신청서, 가구원소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역공동체참여확인서)

※ 등본상 배우자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접수처	접수기관명	()구 ()동
	연락처	
	담당자성명	

【참고 1】 희망플러스통장 필수자격기준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사업공고일 기준)로서
2.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매월 정기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며, 가구 자산·소득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3. 사업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1998.3.25이전 출생)의 성인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 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동일 근무처는 아니어도 됨)

【참고 2】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제외 기준

- 자영업자(사업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용근로증빙이 가능한 자와 자활사업참여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능)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12개월이상(법원)/10개월이상(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중인 중인 자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6년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붙임 제2호】

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신청서

<p>☞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하세요.</p> <p>☞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음, 0원 등 명시) ※ 음영(■)부분은 본인 작성 제외란입니다(자치구에서 확인후 기재).</p> <p>☞ 1가구에 정기근로소득자가 1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p> <p>- 신청자는 추후 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p> <p>※ 희망플러스통장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p>	<p>신청자 본인 증명사진 (2.5cm×3cm)</p> <p>※ 면접심사시 본인확인</p>
--	--

자치구 확인란	소득·자산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기준중위소득 _____% (45%~60%)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제외: 희망키움 I, II 통장 안내)	확인자 구: _____(인) 동: _____(인)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장애인 부양 <input type="checkbox"/> 법정모자가정 <input type="checkbox"/> 법정부자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3자녀이상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어르신 부양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일반 저소득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민센터 담당 및 자치구 담당자 날인
본인 작성	통장 저축액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적립금 지원 50%
	저축 목적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주거자금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input type="checkbox"/>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 저축액 및 저축목적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체크필요

I. 기본정보

신 청 자 기 본 인 적 사 항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서울시 거주기간	년	※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타사도 이주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 전입한 날부터 계산)								
	비 상 연 락 망	관 계	성 명	연락처							
	결 혼 상 태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병 역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근 로 상 황	직 업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	□□□-□□□ ***** 전화 :									
신 청 자 기 술 수 준	소지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있음(운전면허증 중,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 족 상 황 (신청자 본인의 정보도 기재함) ***** ***** ****	부양가족수 (신청자제외) 총 ___ 명 · 65세이상 ___ 명 · 장애인 ___ 명	성 명	연 령	관계 <별지>	학력1 <별지>	학력2 <별지>	직업 <별지>	건강상태 <별지>	장애유형 (등급) <별지>	동거여부 (O, X)	
									()		
										()	
										()	
										()	
										()	

※ 주민등록본에 따라 작성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분리시에도 포함하여 작성

[가입신청서 뒷면]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구 의 자 산 수 준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원) <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주택(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무상거주(소유자 :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택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구/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일반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주택(상가, 공장, 창고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있음(차종 : / cc/ 년식) <input type="checkbox"/> 없음
	금융자산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총 원) <input type="checkbox"/> 보험금(총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부채상황	<input type="checkbox"/> 총 대출금액(원, 대출사유 :)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타자산	<input type="checkbox"/> 있음(내역 : , 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 구 소 득 사 항 <small>(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small>	본 인	급여 : 월평균 원 /기타소득 : 월평균 원, 내역()
	배 우 자	급여 : 월평균 원 /기타소득 : 월평균 원, 내역()
	기 타	급여 : 월평균 원 /기타소득 : 월평균 원, 내역()
	총수입액	월평균 원 (급여 및 기타소득 포함)
가구 지출사항 <small>(최근 1년간 월평균 지출)</small>	■ 생활비 : 원 ■ 교육비 : 원 ■ 의료비 : 원 ■ 저축/보험 : 원 ※ 총 지출액 : 월 평균 원	

동일세대원의 재산, 소득, 지출사항을 합산 기재하되 배우자가 세대분리시에도 가구 재산수준 및 소득사항, 지출사항에 배우자 재산·소득·지출사항을 포함·작성하여야 함

II.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신청동기 • 저축액 마련계획 •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은 주거, 소규모창업, 본인 및 자녀의 취업교육 및 고등교육비 중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선택하시고 왜 그 목적을 선택하셨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저축액 마련 계획 등도 포함 바랍니다.
--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희망플러스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 . . .

신청자 성명 (서명)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가입신청서 별지>

※ 가입신청서 중 가족상황 굵은 테두리 안의 항목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신청서 해당 칸에 기입**해주세요.

<가족상황 선택지>

관계	학력1	학력2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1. 본인	1. 미취학(만7세 미만)	1. 재학	1. 상용직	1. 아주 건강함	1. 지체장애
2. 배우자	2. 무학(만7세 이상)	2. 휴학	2. 임시직(계약직)	2. 건강한 편	2. 뇌병변장애
3. 자녀	3. 초등학교	3. 중퇴	3. 일용직	3. 보통	3. 시각장애
4. 부모님	4. 중학교	4. 수료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 건강하지 않은 편	4. 청각장애
5. 형제자매	5. 고등학교	5. 졸업	5. 자영업자	5. 매우 건강하지 않음	5. 언어장애
6. 친인척	6. 전문대학		6. 무직		6. 정신지체
7. 지인	7. 대학교				7. 발달장애
	8. 대학원(석사)				8. 정신장애
	9. 대학원(박사)				9. 건강장애(심장, 간 등)
					10. 비등록장애인
					11. 기타()

【붙임 제3호】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안내

희망플러스 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플러스통장이란?

- 자립의지가 높은 저소득 근로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50%)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 기본사항

-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3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 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참가기간 중 자치구간 이동 시 관할 구청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유의바랍니다.

○ 저축유지 관련

-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3년) 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매칭지원액은 지원불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 ①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연간 3회)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미저축, ④ 미저축 누적 7회 이상, ⑤ 다른 사도로 이주, ⑥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단, 다른 시·도로 이주 시에는 이주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적립한 분은 매칭 지원액 포함지원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축기간 중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본인 가구의 총 소득 및 총 자산(순재산)이 서울시와 재단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은 당초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서울시와 재단이 협의해 결정합니다(지원액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저축적립액은 지급합니다).
-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비 및 고등교육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종료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신 경우 매칭 지원금 및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붙임 제4호】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가구원소득신고서

○ 가구원 정보(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연 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소득여부 (공고일 기준)	미소득시 사유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4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5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원 소득활동정보(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 작성)

연 번	성명	구분	소득활동내용
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알뜰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2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알뜰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3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알뜰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 . 년 . .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 . 일)

위 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신청자 : (인)

【붙임 제5호】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및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 인		-	
		-	
		-	
		-	
		-	
		-	
		-	

-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을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우리은행

5. 정보제공 목적 :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6. 3. 25. ~ 2016. 8. 31.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우리은행장·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자 및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와 동의자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희망플러스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기관, 통장사업진행과 관련한 금융 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서울시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희망플러스 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신청자 : (인)

[신청자 배포용]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신청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용지 앞뒤로 인쇄하여 1장으로 출력 권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복지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진행
 - ▶ 참여자 신청의사 확인, 참여자의 중복신청 확인,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이와 관련한 각종 고지·통지 등 정보제공,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고충처리
 - ▶ 대상자 및 참여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재단은 통장사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운영 기간 및 그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이 필요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협약을 맺은 각 사례관리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참가자들로부터의 개인 정보 수집업무
 - 2.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 정보 이용, 보유, 가공, 검색, 제공 등 기타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략경영본부장

성명 : 류 명 석

직책 : 전략경영본부장

연락처 :

- 이메일 : rms69@welfare.seoul.kr

- 전화번호 : 02-2011-0400

- FAX : 02-2011-0500

② 정보주체께서는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9조와 같음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2. 부터 적용됩니다.

【붙임 제7호】

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년		개월)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구분	153월	154월	155월	'156월	'157월	'158월	'159월	'1510월	'1511월	'1512월	'151월	'152월			
	근무일수															
	기본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기타 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p>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사업장명 : _____</p> <p>○ 사업장주소 : _____ ☎ 전화번호 : _____</p> <p>○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_____ (※ 누락시 접수 불가)</p> <p>○ 사업주명 : _____ (사업주 인감)</p> <p>○ 작성자 : 직급 _____ 성명 _____ (인)</p>																
<p>※ 신청자 본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성명 : _____ (인)</p>																
<p>※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소득자일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는 물론,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선정취소될 수 있고, 추후 서울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붙임 제8호】

2016년 『희망플러스 통장』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 기관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자활사업유형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인턴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 참여사업에 따라 사업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 또는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장이 확인 가능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사업 유형	사업내용	최근 1년간 (공고일기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 (단위 : 원)	
시작일	종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실시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위의 사람은 현재 본 기관의 자활사업에 위 내용과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 기관장 : 성명 (직인/관인)

20 년 월 일

_____ 구·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붙임 제9호】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

☞ 에 표 하시고, 빈칸에 기입 하세요.

- ☞ 기관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참여사업에 따라 사업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 또는 주민센터, 복지시설 기관장이 확인 가능합니다.

구 분	<input type="checkbox"/> 경력증명용(과거 참여확인) <input type="checkbox"/> 재직증명용(현재 참여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내용		사업 참여 기간 월평균 급여 (단위 : 원)
시작일		종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실시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상기인은 위와 같이 지역공동체사업에 참여하였음을, 현재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 기관장 : 성명 (직인/관인)

20 년 월 일

_____ 구·서울시복지재단 귀하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일용근로 사실확인서(참가자용)

참 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일용근로 하고 있는 경우, 최근 1년 간 6개월)						
근로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급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장 명						
사실 확인 내용						
1. 상기 본인은 과거에 상기와 같이 일용근로를 한바 있으며, 현재도 근로를 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중도해지 및 본인적립금 외 매칭지원금 미지급)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참 가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_____ 구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붙임 제14호】

2016년 『꿈나래통장』 체크리스트

신청자(보호자)명	
참가아동명	

첨부서류 확인(필수서류 및 해당자 관련 서류 미첨부시 접수불가)

구분	첨부서류	발급처	제출 (O, X)	비고	
필수 서류	본인작성 제출서류	①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직접 작성, 누락항목 확인, 신청자 본인사진 부착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직접 작성, 누락항목 확인
	공통	③ 주민등록등본 ③-1 가족관계등록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자만 첨부)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직접서명		신청자, 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앞면』 사본 첨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본인		신청서 본인 서명
		⑥ 지역건강보험납입증명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인터넷 발급가능 (최근 1년간 납입증명원)
해당시	개인회생 ⑦ 개인회생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해당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12개월이상(법원) 혹은 10개월이상(신 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증인지 확인	

※ 등본상 배우자관계 또는 3자녀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지역건강보험납입증명원은 전 가구원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첨부

접수처	접수기관명	()구 ()동
	연락처	
	담당자성명	

[참고 1] 꿈나래통장 필수자격기준

<p>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1가구 1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1998.3.25 이전 출생) 서울시 거주자로서, 2.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매월 정기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가구 자산·소득 일정조건 충족하는 자(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3. 사업공고일 기준 만 14세('02.3.25 이후 출생) 이하 자녀 양육가구

[참고 2] 꿈나래통장 선정제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법원 파산면책 결정자 또는 12개월이상(법원) / 10개월이상(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변제중인자는 신청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6년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보건복지부 통장사업 "디딤씨앗통장" 참가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붙임 제15호】

2016년 『꿈나래 통장』 가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하세요.
 ☞ 모든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음, 0원 등 명시) ※ 음영(■)부분은 신청자분이 작성하지 마십시오(구에서 기재).
 ☞ “참가아동”은 가구당 만 14세 이하 자녀 중 1명만 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선정되신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증명사진
 (아동의 보호자)
 (2.5cm×3cm)

자치구 확인란	소득·자산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비수급자 ※ 수급자는 중복체크 가능			화이자 : 구: _____(인) 동: _____(인) ※ 주민센터 담당 및 자치구 담당 날인	
	가구 특성 ※중복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장애인 부양 <input type="checkbox"/> 법정모자가정 <input type="checkbox"/> 법정부자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3자녀이상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어르신 부양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일반 저소득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저 축 액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7만원 <input type="checkbox"/>	저축기간	3년 <input type="checkbox"/>	※본인저축액에대한 매칭적립금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100% - 기타 50%
	10만원 <input type="checkbox"/> ※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함				5년 <input type="checkbox"/>	

※ 저축액 및 저축기간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 표시

I. 기본정보

신청자(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참가아동 성명	참가아동 주민등록번호 (02.3.25일 이후 출생자)									
집 주소	□□□-□□□ ***** • 전화(집) : • 휴대 폰 :									
비상연락망	관 계	성 명 연 락 처								
결 혼 상 태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울시 거주기간	년 개월 ※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타 시도 이주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한 날부터 계산)									
가 족 상 황 (신청자 본인의 정보도 기재함) ***** ***** *****	성 명	연 령	관계 <별지>	학력1 <별지>	학력2 <별지>	직업 <별지>	건강상태 <별지>	장애유형(등급) <별지>	동거여부 (O, X)	
								()		
									()	
									()	
									()	


※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참가아동은 세대분리시에도 포함하여 작성

가구 자산.수입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원) <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주택(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무상거주(소유자 :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 동 차	<input type="checkbox"/> 있음(차종 : / cc/ 년식) <input type="checkbox"/> 없음		
	금융자산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총 원) <input type="checkbox"/> 보험(총 원)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총 원)		
	토 지	<input type="checkbox"/> 있음(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 타 자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건명 : , 시가 :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 구 총 월 수 입	<input type="text"/> 원(본인 : 원 / 가구원 : 원)			

※ 동일세대 구성원의 자산,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배우자가 세대분리시에도 가구 자산수준 및 소득 사항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뒷면]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 신청동기	
참가아동의 교육 및 가정환경 작성	
III. 적립계획	
저축액 조달방법 (저축액을 어떻게 마련 예정인지 구체적 기재)	
IV. 적립액 사용계획 : 참가아동 교육비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양육계획에 따라 기재	
<p>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p> <p>3. 본인은 꿈나래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꿈나래 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성명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구  서울시복지재단</p>	

<가입신청서 별지>

※ 가입신청서 중 가족상황 굵은 테두리 안의 항목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신청서 해당칸에 기입**해주세요.

<가족상황 선택지>

관계	학력1	학력2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1. 본인	1. 미취학(만7세 미만)	1. 재학	1. 상용직	1. 아주 건강함	1. 지체장애
2. 배우자	2. 무학(만7세 이상)	2. 휴학	2. 임시직(계약직)	2. 건강한 편	2. 뇌병변장애
3. 자녀	3. 초등학교	3. 중퇴	3. 일용직	3. 보통	3. 시각장애
4. 부모님	4. 중학교	4. 수료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 건강하지 않은 편	4. 청각장애
5. 형제자매	5. 고등학교	5. 졸업	5. 자영업자	5. 매우 건강하지 않음	5. 언어장애
6. 친인척	6. 전문대학		6. 무직		6. 정신지체
7. 지인	7. 대학교				7. 발달장애
	8. 대학원(석사)				8. 정신장애
	9. 대학원(박사)				9. 건강장애(심장, 간 등)
					10. 비등록장애인
					11. 기타()

2016년 『꿈나래통장』 신청안내

꿈나래 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 또는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 기본사항

-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연계 복지시설로서 따로 공지됨)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참가기간 중 자치구간 이동 시 관할 구청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유의바랍니다.

○ 저축유지 관련

-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5년) 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셔야 합니다.(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매칭지원액은 지원불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 ①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연간 1회)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미저축, ④ 누적횟수 7회 이상(3년 약정 시) 또는 11회 이상(5년 약정 시) 미저축, ⑤ 다른 시·도로 이주, ⑥ 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무 수행 불가시,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다만, 다른 시·도로 이주 시에는 이주일자 기준으로 24개월(3년 약정시)/40개월(5년 약정시) 이상 적립한 분은 매칭 지원액도 함께 지급합니다.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축기간 중 정기적으로 소득·자산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본인 가구의 총 소득 및 총 자산(순재산)이 서울시와 재단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득·재산기준은 당초 신청자격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서울시와 재단이 협의해 결정합니다(지원액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저축적립액은 지급합니다).
-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단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저축액 사용처

- 꿈나래 통장 적립금은 참여아동의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한 해당 아동의 교육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신 경우 매칭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붙임 제17호】

2016년 『꿈나래통장』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가구원 정보(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소득여부 (공고일 기준)	미소득시 사유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4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5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원 소득활동정보(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 작성)

연번	성명	구분	소득활동내용
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2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3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위 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신청자 : (인)

【붙임 제18호】

2016년 『꿈나래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꿈나래 통장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및 만 18세 이상의 동일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인		-	
		-	
		-	
		-	
		-	
		-	
		-	

- 꿈나래통장 가입자 선정과 관련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본인 및 정보제공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을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시, 주소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우리은행

5. 정보제공 목적 : 꿈나래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6. 3. 25. ~ 2016. 8. 31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우리은행장·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자 및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와 동의자의 신분증 앞면 복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꿈나래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016년 『꿈나래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기관, 통장사업진행과 관련한 금융 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서울시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꿈나래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주 소 :

신청자 : (인)

[신청자 배포용]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신청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용지 앞뒤로 인쇄하여 1장으로 출력 권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복지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진행
 - ▶ 참여자 신청의사 확인, 참여자의 중복신청 확인,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이와 관련한 각종 고지·통지 등 정보제공,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고충처리
 - ▶ 대상자 및 참여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재단은 통장사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운영 기간 및 그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협약을 맺은 각 사례관리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1.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참가자들로부터의 개인 정보 수집업무
 - 2.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 정보 이용, 보유, 가공, 검색, 제공 등 기타 개인정보 처리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략경영본부장

성명 : 류 명 석

직책 : 전략경영본부장

연락처 :

- 이메일 : rms69@welfare.seoul.kr

- 전화번호 : 02-2011-0400

- FAX : 02-2011-0500

② 정보주체께서는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9조와 같음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2. 부터 적용됩니다.